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검토보고서.....34면
- 심사 보고서.....44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6.(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4.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7.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12.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1,990백만원
 - 일반회계 : △700백만원
 - 특별회계 : △1,29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12.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주요내용

- 기금예산규모 : 56백만원
 -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 △3백만원
 -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59백만원

※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부서류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출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개정이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의회 전문위원 직급·직렬 조정(안 제3조 1항 관련 별표)
- 전문위원별 직급(5급 2명 → 5급 1명, 6급 1명)

※ 종전 : 5급 3명(의회사무과장1, 전문위원2)
→ 5급 2명(의회사무과장1, 수석 전문위원1), 6급 1명(전문위원)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직렬 구분표(제3조 관련)

직 위	직 급
수석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위원회명</th> <th style="width: 15%;">직 위</th> <th style="width: 70%;">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p>【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직렬 구분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 위</th> <th style="width: 85%;">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석 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 무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 주사</td> </tr> </tbody> </table>	직 위	직 급	수석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 무관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 주사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직 위	직 급												
수석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 무관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 주사												

참고사항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7	15	100	43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60	15	71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당 이하 소계	621	337	13	67	40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전입세대 증가 및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 증설(별표)

- 벽진면 매수2리 [기존] 4반 ⇒ [추가] 5반(1524~157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448(2024.09.30.)]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061(2024.09.30.)]

라. 입법예고 : 2024. 10. 8. ~ 2024. 10. 30.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별	리 명	분 리 면	반 명 칭	구 역
총 계			799	
벽진면	계		7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매수리	매수2리	(생략)	(생략)
			5	1524~157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읍면별	리 명	분리면	반명칭	구 역
총 계			798		총 계			799	
벽진면	계		74		벽진면	계		75	
	매수리	매수2리	(생략)	(생략)		매수리	매수2리	(생략)	(생략)
								5	<u>1524~</u> <u>1578</u>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연간 50천원(반장활동비 50천원 * 1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규정

나. 제2조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라. 제4조 지도·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326(2024.9.2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5635(2024.9.26.)]

마.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1.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성주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경상북도,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장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 상향(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안 제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를 추가하여 평가방법 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5713(2024.09.26.)]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410(2024.09.27.)]
- 3) 입법예고 : 2024. 10. 23. ~ 10. 30.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을 “1매당 세액이 45만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및 용어 변경분 정비 등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용 중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 「지방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안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과 제1호,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 조문 정비

○ 개정된 용어 정비

- 가산금·증가산금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개정사항 용어 정비
- 안 제5조 제2항
⇒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5730(2024.09.26.)]
-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410(2024.09.27.)]
- 3) 입 법 예 고 : 2024. 10. 23. ~ 10. 30.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29조제2항제1호”를 “영 제3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1호”로, “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3조”를 “제103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
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
회 이상일 것

2. (생략)

② ~ ⑤ (생략)

제14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
조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
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03조의2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 시행규칙 제73조의8-----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및 용어 변경분 정비 등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내용 중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6.(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주군의회 전문위원 직급·직렬 조정(안 제3조 1항 관련 별표)
 - 전문위원별 직급(5급 2명 → 5급 1명, 6급 1명)
 - ※ 종전 : 5급 3명(의회사무과장1, 전문위원2)
 - 5급 2명(의회사무과장1, 수석 전문위원1), 6급 1명(전문위원)

3. 참고자료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 5급 2명에서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전입세대 증가 및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 증설(별표)

- 벽진면 매수2리 [기존] 4반 ⇒ [추가] 5반(1524~1578)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448(2024.09.30.)]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061(2024.09.30.)]

라. 입법예고 : 2024. 10. 8. ~ 2024. 10. 30.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입세대 증가 및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벽진면 매수2리에 1개 반을 추가하여 총 5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전체 읍·면의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일괄 개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제정 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규정

나. 제2조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라. 제4조 지도·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326(2024.9.2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5635(2024.9.26.)]

마.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1.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성주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 상향(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안 제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를 추가하여 평가방법 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5713(2024.09.26.)]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410(2024.09.27.)]

3) 입 법 예 고 : 2024. 10. 23. ~ 10. 30.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되어, 우리군 우편 송달 가능한 금액 기준을 1매당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소유재산의 평가를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안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과 제1호,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나. 가산금·증가산금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개정사항 용어 정비
 - 안 제5조 제2항(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5730(2024.09.26.)]
-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410(2024.09.27.)]
- 3) 입 법 예 고 : 2024. 10. 23. ~ 10. 30.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1]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의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2. 6.(금) 10:30
제286회 성주군의회(2차 정례회)

-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1. 15.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4. 11. 22) : 상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운영 계획서 채택
- 제2차 예결특위(2024. 11.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설명
- 제3차 예결특위(2024. 11. 28) : 상정, 부서별 설명
- 제4차 예결특위(2024. 11. 29) : 상정, 부서별 설명
- 제5차 예결특위(2024. 12. 2) : 상정, 부서별 설명
- 제6차 예결특위(2024. 12. 3) : 상정, 부서별 설명, 계수조정
- 제7차 예결특위(2024. 12. 4) : 상정, 계수조정
- 제8차 예결특위(2024. 12. 5) : 상정, 종합검토 및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제2차 예결특위 부록 참고)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성주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따라 성주군의 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계	624,100,000	100.00%	603,100,000	100.00%	21,000,000	3.48%	
일반회계	567,000,000	90.85%	563,000,000	93.35%	4,000,000	0.71%	
특별회계	57,100,000	9.15%	40,100,000	6.65%	17,000,000	42.39%	
회 별 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40,000	0.13%	747,000	0.12%	93,000	12.4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1,510,000	3.45%	7,329,000	1.22%	14,181,000	193.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00	0.01%	47,000	0.01%	23,000	48.94%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20,000	0.60%	1,127,000	0.19%	2,593,000	230.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0.01%	60,000	0.01%	0	0.00%
	치수사업특별회계	380,000	0.06%	360,000	0.06%	20,000	5.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20,000	0.93%	4,940,000	0.82%	880,000	17.8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700,000	3.96%	25,490,000	4.23%	△790,000	△3.10%

2) 일반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액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67,000,000	100.00%	563,000,000	100.00%	4,000,000	0.71%
세 입 예 산	지방세수입	46,680,000	8.23%	46,272,192	8.22%	407,808	0.88%
	세외수입	18,934,262	3.34%	17,960,910	3.19%	973,352	5.42%
	지방교부세	244,200,000	43.07%	249,200,000	44.26%	△5,000,000	△2.01%
	조정교부금등	10,000,000	1.76%	10,000,000	1.78%	0	0.00%
	보조금	215,343,794	37.98%	195,518,831	34.73%	19,824,963	10.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841,944	5.62%	44,048,067	7.82%	△12,206,123	△27.71%
총 계		567,000,000	100.00 %	563,000,000	100.00 %	4,000,000	0.71 %
세 출 예 산	일반공공행정	21,391,706	3.77 %	19,417,228	3.45 %	1,974,478	10.17 %
	공공질서및안전	33,950,885	5.99 %	24,144,052	4.29 %	9,806,833	40.62 %
	교육	4,345,998	0.77 %	4,019,769	0.71 %	326,229	8.12 %
	문화및관광	34,271,635	6.04 %	44,941,745	7.98 %	△10,670,110	△23.74 %
	환경	53,458,750	9.43 %	51,450,934	9.14 %	2,007,816	3.90 %
	사회복지	118,872,569	20.97 %	112,397,435	19.96 %	6,475,134	5.76 %
	보건	8,906,378	1.57 %	7,706,899	1.37 %	1,199,479	15.56 %
	농림해양수산	107,639,201	18.98 %	83,953,105	14.91 %	23,686,096	28.21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211,757	2.15 %	9,277,480	1.65 %	2,934,277	31.63 %
	교통및물류	19,737,153	3.48 %	20,986,066	3.73 %	△1,248,913	△5.95 %
	국토및지역개발	78,993,849	13.93 %	89,648,722	15.92 %	△10,654,873	△11.89 %
	예비비	3,121,064	0.55 %	26,302,212	4.67 %	△23,181,148	△88.13 %
	기타	70,099,055	12.36 %	68,754,353	12.21 %	1,344,702	1.96 %

3) 특별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7,100,000	100.00%	40,100,000	100.00%	17,000,000	42.39%
세 입 예 산	세외수입	5,962,305	10.44%	4,695,489	11.71%	1,266,816	26.98%
	보조금	35,381,815	61.96%	24,973,552	62.28%	10,408,263	41.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55,880	27.59%	10,430,959	26.01%	5,324,921	51.05%
총 계		57,100,000	100.00 %	40,100,000	100.00 %	17,000,000	42.39 %
세 출 예 산	환경	52,030,000	91.12 %	37,759,000	94.16 %	14,271,000	37.79 %
	사회복지	840,000	1.47 %	747,000	1.86 %	93,000	12.45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0,000	0.12 %	47,000	0.12 %	23,000	48.94 %
	국토및지역개발	4,108,574	7.20 %	1,496,925	3.73 %	2,611,649	174.47 %
	기타	51,426	0.09 %	50,075	0.12 %	1,351	2.70 %

4)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624,100,000	100.00 %	603,100,000	100.00 %	21,000,000	3.48 %
본 청	499,801,048	80.08 %	484,317,089	80.30 %	15,483,959	3.20 %
기획예산실	6,312,041	1.01 %	29,184,288	4.84 %	△22,872,247	△78.37 %
자치행정과	27,114,188	4.34 %	26,235,711	4.35 %	878,477	3.35 %
재무과	38,985,898	6.25 %	37,225,988	6.17 %	1,759,910	4.73 %
미래전략과	14,205,086	2.28 %	16,996,035	2.82 %	△2,790,949	△16.42 %
민원과	3,857,970	0.62 %	3,887,093	0.64 %	△29,123	△0.75 %
관광과	14,477,702	2.32 %	19,083,283	3.16 %	△4,605,581	△24.13 %
문화예술과	10,655,932	1.71 %	12,820,224	2.13 %	△2,164,292	△16.88 %
주민복지과	23,152,829	3.71 %	21,423,603	3.55 %	1,729,226	8.07 %
가족지원과	96,840,035	15.52 %	91,998,109	15.25 %	4,841,926	5.26 %
환경과	37,514,668	6.01 %	26,775,756	4.44 %	10,738,912	40.11 %
농정과	55,057,272	8.82 %	51,319,425	8.51 %	3,737,847	7.28 %
산림축산과	26,162,628	4.19 %	19,047,576	3.16 %	7,115,052	37.35 %
기업경제과	12,455,258	2.00 %	9,494,634	1.57 %	2,960,624	31.18 %
도시계획과	27,664,734	4.43 %	38,957,271	6.46 %	△11,292,537	△28.99 %
새마을교통과	15,215,909	2.44 %	15,636,000	2.59 %	△420,091	△2.69 %
허가과	940,879	0.15 %	730,857	0.12 %	210,022	28.74 %
안전과	33,061,845	5.30 %	20,514,625	3.40 %	12,547,220	61.16 %
건설과	56,126,174	8.99 %	42,986,611	7.13 %	13,139,563	30.57 %
직속기관	23,486,983	3.76 %	21,494,863	3.56 %	1,992,120	9.27 %
보건소	14,651,701	2.35 %	13,315,053	2.21 %	1,336,648	10.04 %
농업기술센터	8,835,282	1.42 %	8,179,810	1.36 %	655,472	8.01 %
외 청	1,521,581	0.24 %	1,195,423	0.20 %	326,158	27.28 %
의회사무과	1,521,581	0.24 %	1,195,423	0.20 %	326,158	27.28 %
사업소	81,288,964	13.02 %	78,835,710	13.07 %	2,453,254	3.11 %
상하수도사업소	53,334,223	8.55 %	50,733,850	8.41 %	2,600,373	5.13 %
체육시설사업소	11,074,927	1.77 %	14,861,721	2.46 %	△3,786,794	△25.48 %
자원순환사업소	16,879,814	2.70 %	13,240,139	2.20 %	3,639,675	27.49 %
읍면계	18,001,424	2.88 %	17,256,915	2.86 %	744,509	4.31 %
성주읍	2,724,464	0.44 %	2,397,961	0.40 %	326,503	13.62 %
선남면	1,962,939	0.31 %	1,964,886	0.33 %	△1,947	△0.10 %
용암면	1,827,097	0.29 %	1,764,014	0.29 %	63,083	3.58 %
수륜면	1,848,785	0.30 %	1,807,618	0.30 %	41,167	2.28 %
가천면	1,499,695	0.24 %	1,441,976	0.24 %	57,719	4.00 %
금수면	1,487,984	0.24 %	1,419,582	0.24 %	68,402	4.82 %
대가면	1,555,590	0.25 %	1,494,132	0.25 %	61,458	4.11 %
벽진면	1,660,670	0.27 %	1,590,275	0.26 %	70,395	4.43 %
초전면	1,828,066	0.29 %	1,752,346	0.29 %	75,720	4.32 %
월항면	1,606,134	0.26 %	1,624,125	0.27 %	△17,991	△1.11 %

5)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계	624,100,000	100.00%	603,100,000	100.00%	21,000,000	3.48%
인건비	71,839,465	11.51%	69,172,874	11.47%	2,666,591	3.85%
물건비	40,640,171	6.51%	36,710,122	6.09%	3,930,049	10.71%
경상이전	228,879,638	36.67%	213,281,086	35.36%	15,598,552	7.31%
자본지출	267,019,669	42.78%	245,406,014	40.69%	21,613,655	8.81%
내부거래	12,409,136	1.99%	10,664,170	1.77%	1,744,966	16.36%
예비비및기타	3,311,921	0.53%	27,865,734	4.62%	△24,553,813	△88.11%

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17,900,000	1,770,680	11,000	128,000	15,171,312	558,008	261,000
성주군인재육성기금	1,286,000	1,285,000	0	0	1,000	0	0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3,540,000	0	0	128,000	3,322,000	90,000	0
성주군자활기금	903,000	0	0	0	868,000	24,000	11,000
성주군식품진흥기금	183,000	0	11,000	0	159,000	3,000	10,000
성주군육외광고발전기금	43,000	10,500	0	0	32,000	500	0
성주군재난관리기금	2,036,000	475,180	0	0	1,544,600	16,220	0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33,000	0	0	0	8,810,000	423,000	0
성주군고향사랑기금	676,000	0	0	0	434,712	1,288	240,000

5. 검토의견

- 검토보고 : 전문위원 황 영 미(제2차 예결특위 부록 참조)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9. 기타 특이한 사항 : 없음